

#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3295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의자 : 오승철 의원

## 1. 제안이유

- 하남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과 관련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포상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포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비함(안 제12조)
- 나. 포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상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 다. 포상 취소 사유 및 심사절차, 표창장 및 부상 등의 환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 3.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8. 3. ~ 8. 7.

○ 제출방법 : 방문(주말·공휴일 제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기재내용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의회운영 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10

- F A X : 031-790-6529

- 홈페이지 : <https://council.hanam.go.kr/> (의안정보 → 조례안 예고)

##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 외부위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

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포상 추천일 현재 실제 재직기간(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공무원
2.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

중,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2명, 의정팀장, 의사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 외부위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포상담당자가 된다.                                                 | ③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
| <신설>                                                                                     |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
| <신설>                                                                                     |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⑤ · ⑥ (생략)                                                                               | ⑧ · ⑨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                                                                |

<신 설>

제13조(포상 통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포상추천일 현재 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음)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포상 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포상 추천일 현재 실제 재직기간(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공무원